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823

발의연월일: 2023. 3. 23.

발 의 자 : 천준호 · 김교흥 · 김한규

남인순 · 민병덕 · 오영환

용혜인 • 이성만 • 이용선

이학영 · 조오섭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그리고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실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 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음.

한편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 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정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 책무, 재난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의 견제출권, 재난피해자들의 회합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며,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난피해자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58조의 2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마. 그 밖에 자구를 정리함(안 제74조의3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재난피해자등"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나.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다.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 라. 재난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마. 재난의 목격자로서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 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재난피해자등에게 충 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피해자등의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2(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난피해자등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난 현장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이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회의를 열거나 회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피해자등 간의 연락, 회의 또는 회합장소 및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재난피해자등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또는 회합 등을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조직 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추모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모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추모행사 개최
- 2.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봉안시설·추모비·상징물 등의 건립 또는 설치
- 3. 재난 현장의 보존 관리
- 4.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5. 교육 · 체험관의 설립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재난피해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모사업 추진·협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를 "재난피해자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재난피해자등"이란 재난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
	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
	은 사람
	나.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다.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라. 재난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
	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
	 람
	마. 재난의 목격자로서 정신

2. ~ 12.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 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 속 • 형제자매

2.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 르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재난 피해자등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 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 물질 적 ·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피해자등 의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 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난피해자등의 의견과 요청사 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야 하고, 필요시 재난 현장 인 근의 안전한 장소에 현장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이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회의를 열거나 회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피해자등 간의 연락, 회의 또는 회합장소 및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재난피해자등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또는 회합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조직 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제65조의3(추모사업의 추진 등)

<신 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모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1. 추모행사 개최
- 2.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 관·봉안시설·추모비·상징 물 등의 건립 또는 설치
- 3. 재난 현장의 보존 관리
- 4.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보 존·활용
- 5. 교육·체험관의 설립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재난피해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추모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 모사업 추진·협의 및 절차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 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 신체 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 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 통신사업법 | 제2조제8호에 따 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 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략) ② ~ ⑦ (생략)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u>- 령령으</u>
	로_	정한다.			
제	743	전의3(정J	보 제공	요청	등) ①
				재	난피해
		등에			
		<u>, , , , , , , , , , , , , , , , , , , </u>			
	1. •	2. (현행	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